

한국콘텐츠진흥원 · (주)공영홈쇼핑

콘텐츠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(주)공영홈쇼핑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과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【목 적】

본 협약은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상품의 개발과 유통 지원을 위해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,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【협력분야】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(주)공영홈쇼핑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상호 합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.

-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
- 문화콘텐츠 상품개발과 유통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
- 콘텐츠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
- 정보 공유 및 보유 인프라의 상호 이용 협조
- 기타 위 업무들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의 협조

제 3 조【비밀유지】

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관계법령,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4 조【본 양해각서의 구속력】

본 협약은 제 3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.

제 5조【협약의 기간】

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6조【본 양해각서의 변경 해지】

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유효기관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1. 본 협약의 책임사항 및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2. 일방이 상대방을 부당히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
3.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4. 각 기관의 정책 또는 환경의 변화, 기타 천재지변 등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7 조【기타】

1. 본 협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3.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권리•의무 또는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(주)공영홈쇼핑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9월 12일



원장 김영준



대표 최창희

